

## 2. 엔지니어링대학원 학칙 신규대비표

현행	기획 검토(안)	비고
제4조(학과 및 정원) ①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는 플랜트 시스템 엔지니어링학과를 둔다. ② 과정별 정원은 <u>교육과학기술부</u> 에서 통보된 정원으로 한다.	제4조(학과 및 정원) ①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는 플랜트 시스템 엔지니어링학과를 둔다. ② 과정별 정원은 <u>교육부</u> 에서 통보된 정원으로 한다.	정부조직 명칭 변경 반영
(신설)	<u>제16조의2(전과)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위원회 및 전과 희망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할 수 있다.</u>	전과 근거 마련
	부 칙  <u>이 학칙은 2017년 10월 26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</u>	